

# 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10. 20.

총 1면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## 정치자금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

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, 기타 물건을 말하며, 누구라도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, 정당에 배부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합니다. 여기에서 개인 후원회를 들 수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,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.

### [정치자금 기부절차]

후원금 기부	기탁금 기탁
후원금 정의	기탁금 정의
기부한도	기탁한도
기부방법	기탁방법